

입학전형 교직원의 회피 및 배제에 관한 규정[제명개정 2020. 3. 1.]

제정 2017. 9. 1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회피·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3. 1.)

제2조 (적용대상 및 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(계약직 교직원 포함) 및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평가·관리절차에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2020. 3. 1.)

1. “회피”란 대입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 등이 스스로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참여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배제”란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 (회피·배제의 대상) ① 회피 자진신고대상은 입학관련 업무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총장 에게 알려야 한다. (개정 2020. 3. 1.)

1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응시생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
2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
3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
4. 기타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이 정하는 경우

② 배제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. (개정 2020. 3. 1.)

1. 입학관련 업무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응시생과 민법상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, 배우자인 경우
2. 동조 제1항에 해당하여 회피 자진신고서 제출자 중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[제목개정 2020. 3. 1.]

제5조 (회피·배제의 절차) 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회피를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연도 입학전형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[별지 서식 제1호]의“입학전형 평가·관리업무 회피 신고서”를 작성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3. 1.)

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배제대상 교직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·검토 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3. 1.)

1. 교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관련 자료
2. 교직원 연말정산관련 자료
3. 교직원 인사현황관련 자료
4. 당해연도 입학전형 지원자 명단

③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제4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입학전형 평가·관리업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3. 1.)

[제목개정 2020. 3. 1.]

제6조 (이의신청) ①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입학전형 평가·관리 업무에 관한 배제통보를 받은 교직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3. 1.)

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배제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3. 1.)

제7조 (위반에 대한 조치) 제4조에 의한 회피·배제 대상 교직원이 본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입학전형 평가·관리 업무에 참여한 경우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3. 1.)

1.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
2. 입학전형 평가·관리업무의 일시 정지
3. 입학전형 관련 보직의 변경

제8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) 본 규정의 업무를 처리하기 한 정보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 제1호] (개정 2020. 3. 1.)

입학전형 (□평가 □관리)업무 회피 신고서

■ 교직원 인적사항

교번		성명	
소속		직위	

■ 지원자 인적사항

성명	생년월일	지원전형	관계

■ 회피사유

--

년 월 일

작성자 : _____ (서명)

호서대학교 입시공정관리위원장 귀중